

기호의집

여성정책, 새로운 지평을 열다

여성정책 방향과 과제

조진우 | 여성부 정책총괄과장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갈 길을 물다

김은희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새로운 여성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박선영 | 본원 연구위원

선진화 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김태현 |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조진우 여성부 정책총괄과장

글머리

2008년 대한민국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구성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시작되었다. 연초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 위원회)는 기존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갈 정부조직개편안도 내놓았다. 국회에 상정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중앙부처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통합되어 보건복지여성부가 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와중에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결론은 보육과 가족 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족부를 만들고, 여성가족부는 그 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부로 축소되었다.

이 글은 업무가 조정되어 여성정책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 여성부가 접하게 된 환경요인들을 검토하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여성부의 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여성정책의 추진방향

1. 조직의 변화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인력 규모는 2본부 3국 2관 22개 팀의 정원 187명이었다.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한 여성부는 1실 2국 13개 과 정원 100명으로, 장차관실의 공통인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실무인력은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업무는 가족정책국과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과거 여성정책본부와 권익증진국 소관 업무가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으로 재편되었다. 새 정부가 대국대과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여성부도 두 국이 각각 4개 과를 두고 있다. 이전 참여정부 시절엔 팀제를 적용하고 소국주의여서 한 개국이 3개 팀을 두고 있었다.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출범할 때 102명의 조직이었다. 그때는 기획조정실 없이 여성정책실장 아래 기획관을 두고 국회와 예산업무를 하는 형태였고, 그 외에 권익증진국과 차별개선국, 그리고 대외협력국 등 1실3국 체제였다. 최초 여성부와 현재의 여성부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당시는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조사

업무를 수행했었던데 비해 지금은 대신 여성인력개발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성별영향평가업무가 새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여성부의 조직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첫째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성주류화를 이끄는 여성정책의 기획조정기능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남녀평등 달성을 기본 요소가 되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과 연결되는 여성인력개발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가 있다.

2. 환경 변화에 대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직이 변화했다는 것 외에 2008년은 여성정책 추진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시작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변화는 호주제를 대체하면서 올해 새로 적용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통해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수행하게 되는 각종 법률행위에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이다.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설명하는 너무도 당연한, 사족과 같은 이 표현이 지난 수 천년동

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법률행위를 넘어 우리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전 호주제는 형식적인 가문의 개념아래 여성은 정식 혼인관계를 통해 남편의 호적에 등재되어야만 합법적인 모성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와 모의 혼인여부는 자녀를 등재하는데 고려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에 대해 합법적인 부모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오히려 여성이 더 우선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게 지워지게 된 것이다. 이제 서류상으로 여성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절대적으로 절반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그 자녀의 양육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동안 자녀양육에서 여성과 남성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면 이제는 양측이 모두를 절반씩 할 수밖에 없다. 여성은 그동안 남성의 둘이라 치부했던 경제적 지원을 남성과 함께할 책임이 있고, 남성은 엄마나 주부의 이름으로만 수행되었던 가사노동 차원의 임무를 함께 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으로는 이흔한 남성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수입이 있는 여성은 그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가족의 구성은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첫 번째 환경요인이 된다. 남성과 여성의 기본 관계가 그곳에서 형성되어 가족 밖의 사회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최종적인 남녀평등의 모습은 결국 가족에서 출발하는 남녀관계의 실질적인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간의 관계인 가족관계를 여성정책의 목표인 사회적 남녀평등의 달성과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 가족 내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깨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남성은 가족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변화는 다양한 사회관계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가계경제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여성의 경제 활동욕구는 더욱 실제화되고 커질 것이다. 여성의 참여가 실질의 차원에서 확대되어 갈수록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성향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전체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회적 성인지성

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부가 앞으로 할 여성정책의 방향은 이와 같은 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 과제

여성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은 부처가 자신의 고유영역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 이외에 국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양성평등 과제들을 다룬다. 따라서 여성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좁은 의미의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여성정책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성주류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성주류화는 그것 자체가 내용을 가진 정책이라기보다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양성평등적이 것이 되도록 촉구하고 선도하는 도구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부처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인권보호와 관련한 정책이 여성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속한다.

여성부가 앞으로 추진할 여성정책의 구체적 과제들은 지난 3월22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두 담겨져 있으므로 이를 요약하여 설명

하고자한다.

1. 여성정책의 추진기조

여성부는 앞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양성평등정책을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관련 여성정책의 기획·총괄 및 정책 개발 업무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이전의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새로 만든 의도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통합대상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보육정책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육정책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데 있다. `04년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이유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출산 등 여성문제와 보육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의 집행에 몰두하다보니 거기에 성인 지적 관점을 반영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같은 부에 있으면서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은 보육이나 가족정책과 별별된 한 국의 업무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의 통합대상이

었다가 집행업무를 이관하고 다시 독자적인 부처로 남았다는 사실을 이상의 분석과 연관해 보면 새 정부가 기대하는 여성부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부가 직접 집행을 한다면 그 정책은 여성적 관점에서 다른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할 것이다. 만일 여성부가 하든 다른 부처가 하든 단지 대상이 여성일 뿐 정책을 추진하는 시각이 같다면 그것은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가 추진하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비록 여성부가 존재한다하더라도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부 혼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가 없다. 오히려 여성부를 제외한 14개 부처 모두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부는 정부 내 각 부처들이 기능에 따라 수행하는 여성정책들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정책방향이 제시되는 것이다.

둘째, ‘경제 살리기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을 마련’ 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에 대한 대처와 맥을 함께 한다. 이제는 여성에게 독립적인 경제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정부는 그러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여성 스스로의 취업능력을 향상하고 그

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셋째,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여성정책을 추진' 한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는 여성정책이 일부 특수한 조건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보통의 여성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었다는 소리도 있다. 물론 이런 비판은 여성정책의 성과를 지나치게 편향하는 면이 있다. 특히 여성취업에 있어서 20년 전과 현재의 여건을 비교하면 대단한 발전을 한 것이 확실하고 이렇게 고용 상 남녀차별을 해소하게 된 것은 바로 여성정책 추진의 결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보는 일반국민들의 시각이 비판적이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홍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여성계가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 한다. 처음부터 여성정책은 여성계와 긴밀한 정체연계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은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적 통치술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계 등 시민사회단체와

의 연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2. 여성정책 실천과제

가.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97에서 '06까지 십년간 2%p가 증가하여 54.8%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70%이상을 나타내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특히 연령대별 참가율에서 상당수 여성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다가 육아가 종료된 후 다시 복귀하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일단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노동시장에 복귀할 경우 근로조건의 하향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하향취업경향은 대졸의 중산층 여성의 한번 경력을 단절하게 되면 다시는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OECD 국가 평균 82.3%(05년)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OECD 국가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 경활률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졸 이하 여성 경활률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증가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여성인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출산과 육아과정을 거치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뒤팽침이 갖추어져야 한다. 만일 육아기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여성 인력개발 추진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여성의 인력개발지원사업은 대부분 지난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현재 12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취업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업지원은 물론 취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졸업생과 지역 내 미취업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지역사회의 청년여성 취업매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 매칭펀드를 확대하거나 대학 자체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준에 추진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사업인 지역사회 맞춤형 전문직종 교육훈련을 지속한다. 어학

생을 대상으로 Women-net을 활용하여 사회저명 여성 인사이 멘토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도 지속한다. 국제전문여성인턴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차세대 여성의 국제활동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지속한다.

여성인력개발분야에서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여성부가 해당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는 6개월 후부터는 이 법에 근거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훈련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앞으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게 될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사업의 근거도 될 것이다. 일명 다일센터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노동부와 여성부가 함께 지원한다. 여기에서 직업상담,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기존 여성교육기관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 구축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 교육기관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기능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이외에 여성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란 채용·승진·보수·직책에서 성차별이 없는 양성평등한 인사관리는 물론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성 편의시설(수유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근절하는 등 유무형의 균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한다. 여성부는 금년 내에 기업(조직)의 여성친화 정도를 측정하는 「여성친화지수(WFI : Women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여 여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에 '여성친화 인증마크'를 도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과의 MOU 협약식, 사례공모, 열린 토론파당, 기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

나. 여성인권 보호 및 종합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기보호능력과 성적결정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증가 추세이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대구 아동성폭력 사건과 같이 어린 아동들까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확산에 희생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방지정책 추진으로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04.9) 이후, 성매매에 대한 불법행위 인식이 확산(`04년 법 시행이전 30.4% → `07년 92.2%)되었지만 실제로는 신·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계속 국내·외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여성의 사회통합지원 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08년 봄, 안양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여학생 두 명이 결국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대구에서는 집단적인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여성부는 성폭력예방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관련 부처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우리 아리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3개소(서울, 대구, 광주)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각 시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 소재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자칫 방치된 채 피해자만을 양산할 수 있었던 대구 성

폭력 사건을 문제화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는 등 그 기능의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는 여성부를 비롯하여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7개기관이 참여하는 「아동·여성 보호대책추진점검단」이 설치되었다. 여성부는 점검단의 간사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부는 소관업무인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교사,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다시는 대구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도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공원 및 놀이터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전국 15개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상담·의료·법률·수사의 24시간 종합 지원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이곳 지원센터에는 여성 경찰관이 상주하며 응급 피해자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폭력 피해여성에게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하여 직업훈련·취업 알선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매매 예방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채팅 사이트 등의 성매매 조장여부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터넷 성매매 예방 활동가를 양성하여 사이버 성매매 경로 차단을 위한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으로 활용한다. 성매매예방 교육 실시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고, 성매매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탈 성매매 여성 자활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외교통상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국가 이미지 실추 방지를 위한 해외 성매매 방지활동을 강화한다. 검·경 합동 「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운영을 활성화하고, 해외에서 성매매 관련 범죄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하고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처벌받게 됨을 적극 홍보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를 지속한다.

여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은 결혼을 통해 이민 오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그 남편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들은 사전에 여성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빈도가 다른 내국인 가정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여성 대상 이주여성긴급전화의 서비스 폭을 확대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계정립을 목표로 「일본군위안부 e-역사관」운영을 활성화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관(가칭)」을 건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08년 여성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정착시키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을 제정하고자 준비 중이다. 이 법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적용범위, 환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지표설정과 연계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각 기관의 정책과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성인지 예산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엔 성인지예산제도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준비 T/F를 구성하여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라.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들

‘여성부는 성격 상 규정에 정해져 있는 업무 이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성관련 사회이슈에 대처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예상되는 여성부가 대처해야 할 정책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

먼저 지난 5월, 17대 국회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문제가 있다. 제대군인 가산점은 지난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하지만 17대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의원이 병역법에 가산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은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일부 위원들이 개정안의 내용이 여전히 위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쟁점은 위헌판결의 취지를 해석하는데 있다. 가산점 찬성측은 현재는 가산점제 자

체에 위헌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가산점이 과도하여 여성 등 비복무자의 공무담임권을 저해하는 수준이었으므로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면 이는 합헌판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가산점제 자체에 위헌판단이 내려졌다는 해석이다. 물론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여성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는 가능성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가산점 부여문제에는 법률 소관 부처인 국방부를 비롯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을 통해 찬성하고 있어서 여성계와의 한바탕 논쟁이 재연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착 과정도 여성부가 관심을 가질 분야이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민법의 절차법으로써 대법원 소관이다. 하지만 여성부가 가족관계등록제도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그 전신인 호주제 폐지문제가 남녀평등의 이정표를 제시한 여성계의 주요 이슈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성부와 여성계는 단지 남녀차별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던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호

주제 폐지의 취지에 맞게 남녀평등을 상징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일부 여성들이 새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여성부는 그 여성들의 문제를 검토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원래의 의도대로 잘 정착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이 제기한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여과없이 노출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여성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시 불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인식과 사고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때 변화의 방향이 남녀평등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와 관련 문제 중에서 여성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 있다. 낙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낙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은 여성의 몸과 관련하여 여성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낙태를 예방하는 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어쩔 수 없어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를 줄이는 일이다. 특히 여학생이 출산과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일과 비혼, 이혼, 재혼 등 다양한 결혼관계와 상관없이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장기적으로 여성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갈 길을 묻다

김 은 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지난 연말에 치러진 대선과 연이어 있었던 18대 총선까지 정치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권 정치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거리의 정치’가 역동하고 있다.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만큼 전반적인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지는 일은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갈등과 이를 함께 풀어나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여성과 관련해서 보면, 새 정부 출범은 희망적인 기대보다는 적지 않은 우려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계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이 강행되어 결국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재편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보육과 관련된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성부는 인력의 절반가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예산도 전체의 95% 정도가 축소되었다. 어쩌면 새로 취임한 여성부 장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어떤 개별정책의 추진보다도 약화된 조직의 위상으로 인해 풀 죽은 여성부 조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여성부 조직의 축소는 있었을지언정 국가가 수행해야 할 성 평등 정책 자체가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므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진 것이 보여 진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국가계획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 연말 새 정부 임기와 함께하게 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확정 발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참여정부 시기와 겹쳐지는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정책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함께 새 정부 여성정책 추진에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여성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여성정책은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다. 2001년에 독립적인 여성정책추진기구인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이후 2005년에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소관업무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 이슈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법률적인 근거에 입각한 여성정책의 체계화가 가능했고, 특히 참여정부 여성정책의 성과로는 우선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은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에 대한 대안 마련,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그리고 성인지 예

산제도 등 성 주류화 전략 실행의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다른 분야 업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측면에서 보아도 제1차(‘98-‘02) 및 제2차(‘03-‘07) 기본계획 기간 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였고 성차별적 요소를 약화시켜 실질적 남녀평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국가운영과 사회관계 전반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성 주류화 전략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재정법 제정에서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적 분야에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여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03-‘07)와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03)를 시행하였다. 여성 노동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05)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

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유·사산 시 휴가를 사용(‘05)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04)을 비롯하여 보육정책 확대를 위해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국비 : 2,090억원(‘02) → 10,435억원(‘07)하였으며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06)과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하였다.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폭력피해 여성 ONE-STOP 지원센터 설치·운영(‘07, 14개소)하고, 성매매방지법 제정(‘04) 이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성매매 집결지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시작으로 평등하고 한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을 통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건강 가정기본법 제정(‘04)으로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개별 정책과제는 표-1 참조].

〈표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1-1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2-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3-1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3-2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3-3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경쟁력 제고 3-4 여성정보화 촉진 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4-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4-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4-4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4-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4-6 보육서비스의 강화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5-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5-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5-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평화·통일·국제협력 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6-1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6-3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7-1 여성 건강증진 대책강화 7-2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7-3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4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8-2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9-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반조성 9-2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10-2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10-3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특히, 성 주류화를 주요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성 주류화의 주요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화한 것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정책이었다. 이는 한국의 여성정책이 잔여적 복지정책, 정책대상으로서 피해자 여성을 상정하는 기존 여성정책의 주변화된 성격에서 벗어나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과 모든 국가 정책에 젠더관계에 대한 분석과 시각을 도입하는 성 주류화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성 주류화는 일견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국가 정책의 입안과 실행, 평가 과정에서 내재화되어 있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성 평등 관점이 도입되게 함으로써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변화시킬 수 전략으로, 참여정부의 공약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비로소 성 주류화 전략이 제도화되고 실행된 것은 여성정책의 한 단계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성 주류화의 도구인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교육 등이 성 주류화의 전략적 목적에 과연 부합되도록 실행되었는가, 성 주류화 전략이 계획 수준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가 하는 점에는 선뜻 긍정적인 평을 하기가 쉽지

않다. 성 주류화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연 성 주류화의 “전환”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아직까지 성차별과 성 평등, 성인지 정책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책무 규정이 미흡한 점, 여성정책에서는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점,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그 외에도 KTX여성승무원 문제로 상징되고 있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여건은 나아지지 못한 점이나, 군가산점 부활 시도나 양성평등교사채용 목표제에 대한 논란과 같이 ‘평등’이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에서 비롯한 사안에도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부족했던 점 등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 하에서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이므로 보다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직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새 정부 여성정책

그렇다면 새 정부 여성정책은 어떤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을까? 최근 여성부는 여성분야 국정과

제 실천계획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라는 기치 아래 양성 평등 정책을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관련 여성정책의 기획·총괄과 정책개발 업무에 중점을 두고, 경제 살리기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하여, 여성정책을 다수의 여성을 위한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정책 추진기조로 하여, ■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 여성인권 보호 및 종합지원, ■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여성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일센터」의 One-Stop 취업지원 체계¹⁾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성 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국정지표와 이념에 맞게 실용적 실행계획으로 개편하여 5대 국정지표와 국정과제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여성부가 발표한 실천계획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점이 「다일센터의 One-Stop 취업지원 체계」 구축인데, 이는 지난 2007년 대선공약²⁾에서 강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도 설치된 바 있는데, 새로 구축될 「다일센터의 One-Stop 취업지원 체계」와 기존의 지원체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여성 다시 일하기와 같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괜찮은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현실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보다는 본래 여성이 수행하던 돌봄노동을 저임금 불안정노동 형태로 시장화하고 다시 여성들이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주변적 노동자 지위를 지속·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노동시장 내의 여성노동

1) 2007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여성공약

5대 목표	12대 영역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	1. 여성 다시 일하기 2. 2030 여성 일자리 갖기 3. 여성 CEO 만들기 4. 가족 친화적 기업 만들기
남녀가 함께 둘보는 사회	5. 우리 아이 함께 둘보기 6. 우리 아이 안전하게 키우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	7. 폭력없는 안전한 세상 8. 건강한 여성, 국가의 책임
따뜻한 가족이 힘이 되는 사회	9. 가시노동 인정하기 10. 평등한 가족 만들기
여성 대표성이 보장되는 사회	11. 공직부터 양성평등 12. 여성의 동참하는 평화통일

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고 관련정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저 맡겨놓기만 할 수는 없는데, 이에 대해 여성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노동정책은 여성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고 특히 여성부는 비정규직, 공공무분 차별시정 관련해서 노동부보다 성 인지적인 시각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개입해야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보호 방안, 사회보험 관련, 휴일 휴가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성부가 발표한 실천계획을 보면, 여성부 스스로 소관업무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5개영역 15개 정책과제와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

여를 위해 국가 정책의 성 주류화와 통합적 여성 정책 추진 및 의사결정에 참여 확대, 2.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를 위해 여성의 건강 및 복지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여성근로자 차별해소 및 보호, 4.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해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일-가정 양립,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평등문화 확산,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여성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세부내용은 표-2 참조].

물론 여성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책과 해당 소관부처에서 소관하는 정책이 구분되기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정부조직 전반의 성 인지적 시각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여성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소관부처의 정책에 개입해야만 실질적인 성 주류화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성정책 방향 및 내용도 이 점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부의 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표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1. 국가 정책의 성 주류화	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2. 성인지 예산제도 기반 확대 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2. 시민사회와의 협력
	3. 의사결정에 참여 확대	1. 공직 여성참여 확대 2. 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1. 여성의 건강 및 복지 강화	1. 여성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2. 여성 복지 서비스 강화 3. 여성장애인 권리 증진 4. 여성의 빈곤 해소
	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1.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제고 2.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3.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1. 성매매 방지법 위반 교육·홍보 2.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내실화 3. 성매매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 여성 일자리 확대	1. 성장동력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제도개선 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2. 여성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1.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2. 근로여성의 전문능력개발 3.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3. 여성근로자 차별해소 및 보호	1. 노동시장내 성차별 해소 2. 여성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3. 비공식부문 여성근로자 보호
돌봄의 사회적 분담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2.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서비스 질 향상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1.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3.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4. 가정내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3. 일-가정 양립	1. 모 성보호제도 활성화 2.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3.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1. 평등문화 확산	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2. 양성평등 미디어 활성화 3. 양성평등 교육 확대
	2.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3.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 교류협력 강화	1. 남북한 여성협력 활성화 2. 국제협력 강화

여성부의 제자리 찾기-성 평등 전담기구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 필요

새로 출범한 여성부의 조직 및 소관업무 범위는 2001년 출범한 여성부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조직적 위상이나 관심도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일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의 하나인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관심도나 의지가 이전에 비해 강력하지 못한 점이 그 이유로 보여진다.

개별 여성정책의 수립·집행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부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전체 정부정책의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관심도나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과 위상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부 스스로 여성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그 성과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이제 사업조직을 떼어내고 슬림화해서 집행업무를 떨고 ‘정책협력 부처’가 된 여성부의 조정 기능 즉, 성 주류화 기능에 주목해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성 주류화 부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으며 강력한 추진의지가 천명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성부가 보다 주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예산의 원칙으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성인지 예·결산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고²⁾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성인지 예산은 제도적 골격만 갖추었을 뿐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할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으로, 여성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여성부와 함께 연구자·전문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성인지 예산 추진단’을 구성해 성인지 예·결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민사회 및 시장과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2) 국가재정법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제26조①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제34조 11)’해야 하며, 결산에서도 “정부는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제56조①해 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제57조 5)”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참여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정부의 의지와 역할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정부와 여성운동의 협력적 파트너십 그리고 17대에서 늘어난 여성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2000년 들어 여성단체들은 거버넌스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왔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것이 여성정책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성부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조건을 이루는데, 새 정부가 시민사회를 사실상 거버넌스 영역의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와 함께 여성부문의 경우 시장을 주요한 거버넌스의 파트너 또는 정책의 대상영역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일례로 최근 경제5단체가 기업 경쟁력 강화 내지는 효율 차원에서 향후 여성노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성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지점

이며,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제도 역시 정부차원의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코드 ‘실용정부’, 여성정책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명박 선 기간내내 ‘경제살리기’를 구호로 내세웠고 새 정부 역시 이에 기반하여 ‘실용’과 ‘효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국적 변형³⁾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정책 역시 전체 정부정책의 기조와 발맞추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여성정책은 이러한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에서도 그 명암과 수혜집단이 분명한 전략이다. 긍정적으로는 경제효율과 고용확대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함께 복지 수준은 정체하거나 후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려움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자

3) 김호기(2008),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리더십, 국정운영 평가”, 18대 국회 과제 제안 토론회(2008. 6.3)
이명박 정부의 발전 전략을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neo-liberal developmentalism)라고 명명하고 있다.

명하다.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2008년 시점에서 선불리 새 정부 여성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일은 적절치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여성정책에 대한 강조,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실용’과 ‘효율’에 반한다 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눈앞의 ‘실용’과 ‘효율’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잘살기 위한 사회적 통합이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성’ 임을 설득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희(2008). “18대 여성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향 모색 간담회, 여성 정치세력민주연대/21세기여성포럼/여성신문사 공동주최(2008.5.29).
- 김영옥(2007).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비전 모색”, 여성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열린우리당(2007.4.13).
- 김은희(2007). “2007 대선, 여성들의 요구와 정당별 여성분야 정책의제 검토”, 전다리뷰 2007년 겨울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연합(2008).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하는 20대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2008.3.13).
- 참여연대외, 18대 국회 고지 제안 토론회 –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2008.6.3).
- 여성부 <http://www.moge.go.kr>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새로운 여성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⁴⁾

박선영 본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사회의 최고 규범으로 한 국가의 정책은 그 사회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 전개된다. 따라서 헌법은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특히 그동안 여성정책이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발전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헌법이 여성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가는 여성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행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서 마지막으로 개헌된 이후 20여년이 지났다. 한국 사회에서 20년이라는 ‘시간차’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현행헌법이 시대정신과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을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를 감안하면 현행헌법의 여성관련조항이 미래의 여성상과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앞으로의 여성정책의 방향에서 현행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여성, 가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현행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최근에 제·개정된 외국 헌법의 여성, 가족관련 조항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셋째,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현행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의 문제점

1. 여성관련조항의 문제점

현행헌법의 여성관련조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권을 시작으로 개별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별도로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⁵⁾

이러한 성평등의 원칙은 헌법상 각 생활 영역에 따른 개별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

4) 이 글은 박선영, 배은경, 석인선 외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권법제정비연구(I)-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5) 권영숙,『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7, 384쪽.

어 있다. 첫째, 제34조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갖는 사회법치국가원칙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 을 촉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둘째, 경제적 생활 영역에서이다.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따른 모성보호에 근거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여성의 경제적 생활 영역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셋째, 가족생활영역에서이다.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리고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 관계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이와 같은 여성관련조항이 갖는 문제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성평등이 일반적 평

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성평등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제와 관행에서의 차별 철폐, 노동시장 구조, 남성우월적 문화나 의식 개선 등을 위한 작업과 사회정책적 투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 평등”으로 협약하게 규정한 제헌헌법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로서 규정하던가 아니면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2조제4항의 여성 근로에 대한 보호와 차별금지 규정은 1987년 개헌당시에 ‘여자와 소년’을 묶음으로 보던 조항구성이 폐지되고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를 구분하였다. 또한 여자의 근로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은 1987년 개헌당시

에 여성단체의 요구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즉 여자와 연소자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배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32조제4항을 성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 근로의 독립적 조항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⁶⁾ 또한 같은 조항에서 근로,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여성노동이 남성노동에 비해 열등하게 평가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언급되지 않은 채 그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여전히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력의 기준이 되는 남성의 그것과 다를 뿐 아니라 거기에 미달하는, 열등한 노동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여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모성보호’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 한계를 가진다. ‘모성보호’라는 말이 헌법 텍스트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헌행헌법에서였지만, 이는 여자의 근로와 관련한 제32조가 아니라 가족생활과 보건에 관한 제36조에 포함되어 언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한 노동권을 의미하는 조항으로 해

석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한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었다(제34조제3항). 그러나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처음으로 규정했던 제5공화국 헌법 제32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차원의 내용이지 국가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만을 특기하였던 제5공화국 헌법과는 달리, 현행헌법에서는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를 제공(제5항)해야 한다고 둥동그려 규정됨으로써,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는 후퇴되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여성이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여성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수혜자 범

6) 이은영, 「법 여성학강의」, 박영사, 43~44쪽.

주로만 재현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여성들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에 대한 인정의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차원의 문제로 축소 함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의 교정으로 확대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로막았다는 점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가 여성들을 평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보다는, 여성들을 수동적 약자로 위치 짓고 이들에게 편의과 배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온정주의적 모델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성별과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모든 헌법적 권리를 향유할 평등한 주체로서 위치 짓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관련조항을 특수하게 혼인, 가족 등 사회생활의 사적영역에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시킨다든지, ‘여자의 근로’를 일반적 근로와 다르고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고립된 영역으로 규정짓는 등의 규정방식은 극복될 필요가 있다.

2. 가족관련조항의 문제점

헌행헌법은 제36조를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과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은 제헌헌법 당시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여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보건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20조)를 시작으로 제5차 개헌에 의해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1조)로, 제8차 개헌에 의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제34조제1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4조제2항)로 개정되고, 제9차 개헌에 의해 현재 모습이 되었다. 헌행헌법에서 ‘모성 보호’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제36조제2항), 이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성의 모성을 ‘가족’에 관련된 것으로 볼지 여성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볼지가 논란이 될 뿐 아니라, 여성의 근로에 대한 조항

에서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특별한 보호’와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모성’이 어떤 관계인지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밖에도 제36조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이성애를 근간으로 한 근대가족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혼모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가족의 다양화와 탈 제도화를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다른 나라의 헌법이 아동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행헌법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외국 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 규정양태

이 장에서는 주요 외국 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의 규정양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1. 주요 외국 헌법의 성평등관련조항의 유형별 특징

주요 외국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법 앞에 평등’과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헌법에 평등원칙이나 차별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도 헌법상 명시적인 성평등 규정은 없지만, 프랑스 인권선언과 제4공화국 헌법전문, 제5공화국 헌법전문의 일반적 평등원칙과 성평등권에 대해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과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반적 평등원칙과는 별도의 조문으로 성평등을 규정하거나, 아니면 개별 평등권 보장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선진적인 국가 즉,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국가목표로 규정하거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규정 형태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법·정치체계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각국의 성평등관련조항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을 일반적 평등원칙과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를 통해 보장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나라 중에는 가족, 노동, 정치 등의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개별 평등권 조항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종, 신조, 성, 사회적 신분, 가문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일반적 평등권과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선언한 후에 참정권, 가족생활에 있어서 성평등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과 성별,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영역에서의 성평등, 공직 취임에 있어서 성평등과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혼인에 있어서 성평등을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르완다의 경우에는 국민의 평등보장과 함께 여성과 남성의 평등보장을 위해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일반적 평등권과는 별도로 성평등을 확정적인 독립규정으로 두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 중에는 성평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와 특정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개별 성평등 조항을 함께 두고 있는 국가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벨기에의 경우는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함께 성평등을 별도의 독립 규정을 통해 보장하고, 별도의 규정을 통해 공무취임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특별하게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법 앞의 평등과 함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규정과는 별도로 “현장에 열거된 권리 및 자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규정을 통해 성평등의 원리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 평등권조항과는 별도로 성평등을 독립규정으로 두고,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평등 실현을 국가목표로 규정하거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규정방식은 성평등조항을 통해 평등한 기회는 주어졌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 등으로 인해 기회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 중 스위스와 독일의

규정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스위스는 하나의 조문 안에 모든 인간의 법 앞에 평등과 차별금지, 성평등과 양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평등을 확 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하나의 조문 안에 별도의 항을 통해 일반적 평등권,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과 함께 후문에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것을 촉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불이익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가의 목표규정으로서의 실질적 평등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일반적 평등권, 차별금지, 성평등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평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후문에 평등원칙에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2. 외국 헌법의 가족관련조항의 유형별 특징

외국 헌법의 가족관련조항은 국가에 의한 가족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물론,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헌법에 가족관련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개별법(가족법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가족관계는 법적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또는 개입의 방식과 내용은 그 나라의 가족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제도로서의 가족’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가족의 보호와 가족구성원에 대해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필리핀 등의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혼인, 가족,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제49조제1항)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무와 함께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부양을 의무로 하고 있다(동조제3항). 또한 가족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의무를 부부의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혼인과 가정의 국가보호와 함께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헌법에서는 가족생활의 존중(제12절)을 규정하는 이외에 가족관련에서는 제3조에서 가족과 혼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제1정, 제2절)와 가족의 노인 돌봄을 의무화하고 있다(제4절).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호, 가족형성에 대한 부부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제3절).

둘째,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여 가족에 대한 제도보장과 함께 기본권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의 헌법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혼인의 자유와 가족형성의 자유, 혼인과 가족형성에 관한 성평등을 규정하고 국가의 가족보호·원조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의 ‘혼인과 가족형성의 자유’(혼인에 관한 국가개입과 차별금지), 개인상호간(가족내)의 평등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보호의무 및 가족형성·아동양육·모성보호 등을 사회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스위스는 혼인과 가족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성인과 아동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사회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의 기본토대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동체로서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그러나 가족의 정의를 성인과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족이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공동체(동성커플 등)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가장 최근의 헌법형태인 유럽연합 헌법(안)에서는 개인 및 가족생활의 존중과 혼인 및 가족형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가족 조화를 위한 임신으로 인한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유급출산휴가와 육아휴기를 취득할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모성권을 평생노동권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한 것으로 모성을 보호가 아닌 권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⁷⁾

이상으로 주요 외국 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관련조항은 성평등이 독립 규정으로 존재하고 실질적 평등을 국가의 목표로 규정하거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의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가족관련조항은 혼인과 가족형성의 자유(혼인에 관한 국가개입과 차별금지), 개인상호간(가족내)의 평등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보호의무 및 가족형성·아동양육·모성보호 등을 사회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보여진다.

7) 석인선,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제12권제4호, 2006, 310쪽

현행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 개정방향

이하에서는 현행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의 한계와 외국 헌법의 여성, 가족관련조항의 특징으로부터 도출되는 함의를 토대로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

가. 평등권에 성평등 조항 추가

일반적 평등권과는 별도로 성평등을 확정적인 독립규정으로 추가하는 것을 통해 성평등이 헌법적 질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⁸⁾ 물론 현행 평등권 조항으로도 성평등은 보장되나, 성평등을 확정적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으로,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형식적 평등권이 갖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실질적 평등을 어떤 내용과 형태로 담아낼 것인가이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성평등

현행헌법의 성평등 보장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을 국가의 목표로 명시하는 것이다. 성평등이 국가목표규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을 실현 할 단순한 권한을 넘어 국가에게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협존하는 차별을 제거하는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보편적 평등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규정방식이다.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국가는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협존하는 불이익의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는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법률은 특히 가족, 교육 및 근로의 분야에서 양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고 분명한 국가목표 규정을 둘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할 수 있다.⁹⁾

2)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의 근거 조항 추가

다른 하나의 방식은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8) 김철수,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헌법학 연구』, 제10권 제2호, 2004, 56쪽.

9) 정태호, “권리장전의 현대화”, 『헌법 다이보기』(형적과비평), 2007, 279-280쪽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공직선 거후보 여성할당제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여교수채용목표제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고용 분야에서는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추진되고 있다.¹⁰⁾

현법상의 평등원칙과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즉,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와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과를 같게 하려고 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역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남녀 간의 불평등이 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간의 법적 차우의 차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지나지 않고 현실에서는 개인의 능력·노력과 무관한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격차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과거의 차별의 잔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생산된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기회의 불평등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지속 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회 구조적인 남녀격차와 과거의 차별의 영향에 의해 출발점에 격차가 있는 경우, 그 격차가 해소 될 때까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실시하여 한정적이고 일시적으로 남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구별이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²⁾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한정적으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개별 법령을 통해 규정할 경우, 위헌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역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헌법으로

10) 각각의 법령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149-166쪽; 박선영·김진 외, 「제2회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 발굴」, 정리, 여성가족부, 2006, 35-46쪽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11)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실행과 함께 등장하게 된 역차별 논쟁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크게 3가지 이유이다. 첫째,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실력을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능력주의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반대하는 논자들은 이 제도가 성·인종 등 불합리한 요소에 기초해서 최적임자를 배제하고 능력이 모자라는 자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이 능력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둘째,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할당제의 형태로 실행되면서 다수 집단에 속한 개인을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수혜자를 과다 포괄(over-inclusive)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셋째, 일정비율을 소수집단의 구성원으로 체우는 할당제 방식은 개인의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혜택을 받아 채용되거나 승진되었다는 식의 ‘오명’을 쓰게 한다는 것이다.

12) 헌법재판소는 ①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혜택을 준다는 점, ②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③ 항구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는 첫째, 그리스와 같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국가에게 여성에 대한 불평등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그리스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국가는 특히 여성을 제한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평등권이 아니라 제2편 일시적 조항에 편재되어 있다.

둘째, 오스트리아와 유럽연합 헌법조약안과 같이 성평등권과 함께 ‘현존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남녀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나. 개별 성평등권은 평등권으로 편입

평등권에 성평등 조항을 추가할 경우, 개별 성평등권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헌법은 고용, 사회보장 등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여성에 대한 특별조항은 출

산하는 성으로서의 여성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이것은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특별조항은 평등이라는 큰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통합하여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술과 같은 방향으로 성평등권이 추가되면 개별 성평등권은 평등권 조항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과 내용은 스위스와 같이 일반적 평등권에 성평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정 영역을 열거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특정영역의 열거방식은 우리 사회와의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스위스는 가족, 교육, 노동의 영역에서의 법률상, 사실상의 평등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지만, 이것은 그 나라의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족관련조항의 개정방향

가. 혼인과 가족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통해

가족의 다양성 수용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된다고 할 때 혼인이 성립되는 양성이란 남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¹³⁾ 물론 제36조제1항은 ‘양성의 평등’이라고 했지 남녀 간의 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이 남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아직 소수의 입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서의 혼인과 그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이성애를 바탕으로 한 혈연중심의 가족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가족은 근대 핵가족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제도로서의 가족이 아닌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행복추구의 장으로서의 가족으로 그 개념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특정 가족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는 공동생활약정(PACS)법을 통해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계약으로서 공동체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있고¹⁴⁾, 동성결혼을 이성간의 결혼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하는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이성 간의 관계에 한정지를 필요는 없게 된다. 따라서 이성애에 기반 한 근대핵가족 모델에서 탈피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헌법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그들에게 가족형성의 자유와 권리 를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과 가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과 가족의 법적·경제적·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 조항은 전술의 성평등권으로 통합된다. 이 방식이 기본권의 편재라는 측면과 그 내용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3) 현재 1997.7.16.95호 개정-131명합

14) 공동생활약정이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의 자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나. 모성보호에서 모성권 보장으로

모성보호는 보호 패러다임이 가져오는 성별분리와 이에 의한 성차별적 질서의 극복을 위해 모성권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성의 개념을 임신과 수유로 한정하던 것에서 양육과 관련된 돌봄 노동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이며 의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헌법조약안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일-가족 양립을 위한 출산휴기와 육아휴직을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규정할 수도 있고, 국가는 모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형태로 모성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식은 일-가족양립 관련한 출산휴기와 육아휴직제도는 현재, 개별법령을 통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성을 남녀의 권리로 규정하고 임신·출산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 노동으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규정방식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모성보호에 모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규정은 그 사회의 인간상 또는 여성상 등을 투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상, 여성상을 형성해나가기도 한

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모성보호의 객체에서 모성권의 주체로 재정립하는 것은 여성상에 대한 변화라는 측면과 모성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인정된다.

다. 아동권 보장 규정 추가

아동은 한 국가의 희망이고 미래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에게는 각기 치해있는 환경과 무관하게 출생초기부터 자신들의 발달에 필요한 최적의 사회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개별 아동에게는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아동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아동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의 주체이고, 제34조제4항과 제32조제5항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연소자의 근로권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향상 의무나 특별한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권리 행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이거나 권리향유의 주체로 보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가족관련조항의 국제질서가 가족형성·아동권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권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권의 규정방식은 독일처럼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공동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감시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고, 유럽연합 헌법 조약안처럼 ‘아동은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그 복리에 필요한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아동권을 주관적 공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도 있다.

독일과 같이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공동사회가 감시한다’는 형태로 헌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 하는 것은 헌법의 통일성 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아동에 대한 가족과 국가의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 헌법조약안과 같이 아동권을 규정할 경우, 아동 역시 헌법 제10조 상 ‘인간의 존엄’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주장 할 실익이 없고, 헌법 체계상 현재의 제36조의 가족관련 조항에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제34조와 중첩되며,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구조로도 보장이 가능 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을 보호 대상이나 권리향유의 주체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아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주관적 공권으로서 아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동들의 삶의 조건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선진화 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¹⁵⁾

김태현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는 말

2008년은 1908년 UN이 제정한 ‘세계여성의 해’ 100주년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유엔은 올해의 화두를 ‘여성경제력 향상’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우리사회도 여성문제를 보는 관점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동안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과제 앞에 놓여있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문제의 사회적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들이 나타났다. 자유주의 여권론은 사회적인 제도 및 법에 있어서의 개혁을 꾀할 것을 주장했으며, 마르크스주의 여권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모순인 계급모순과의 관련성 속에서 여성문제의 원인을 밝혔으며, 급진주의 여권론은 성차별이 사회제도 내에서 체계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에 동의하고 가부장제가 여성의 낮은 지위를 결정하는 근본 요인임을 증명하고자 했으며, 사회주의 여권론은 성의 특성이 어떻게 사회·경제 및 정치적 범주 내에서 발

달되고 지속되어 여성들을 억압하는 데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를 설명하여왔다. 선진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생태학적 여성주의 이론은 여성 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여성과 자연의 파괴를 야기하는 원인이 가부장제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Braicotti(1992)가 제시한 from ‘she-self’ to ‘she-other’ 관점이 여성정책의 방향에서 주목할 만하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에서는 이 타자성을 억압 및 열등감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관대함,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차이를 허용하는 존재방식, 사고방식, 표현방식을 의미하는 역의 기능도 담고 있다. 이 역의 기능이 선진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사회의 여성정책 방향 설정에 고려해야 한다.

선진화 길목에서 만나는 여성·가족정책의 여건

선진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에서 여성가족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여건을 여성과 경제영역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이혼률 증가, 다양한 가족형태 및 다문화 가족 증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및 세계화 진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기념 국내학술대회(2008. 4. 25)에서 기조발제한 글임.

1. 여성의 경제영역의 변화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급격히 감소했다가 그 후 조금씩 증가하여 2004년 49.8%를 지나 이제 50%를 돌파하여 2006년 50.3%(표1), 2008년 현재 50.2%(여성가족부, 2007)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50%수준을 맴돌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표2)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적절하게 마련된다.

다면 향후 10년 간 여성경제참여율 60% 수준(네덜란드 56%, 캐나다 62.1%, 덴마크 74.7%; ILO, 노동통계연감, 2006)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여율이 쌍봉형(M자) 곡선을 그리는 것은 육아부담으로 20대와 30대에서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여성취업 장애 요인으로는 육아부담이 47.9%로 가장 높고 사회적 편견이 17.4%, 승진 등 근로여건이 12.6%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표3).

〈표 1〉 연령별,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연령	여성	남성	(단위: %)
총계	50.3	74.1	
15~19	8.9	6.3	
20~24	59.1	48.4	
25~29	67.5	78.9	
30~34	53.1	92.9	
35~39	59.6	94.7	
40~44	65.6	94.5	
45~49	64.4	93.1	
50~54	58.5	89.7	
55~59	49.7	79.9	
60+	28.3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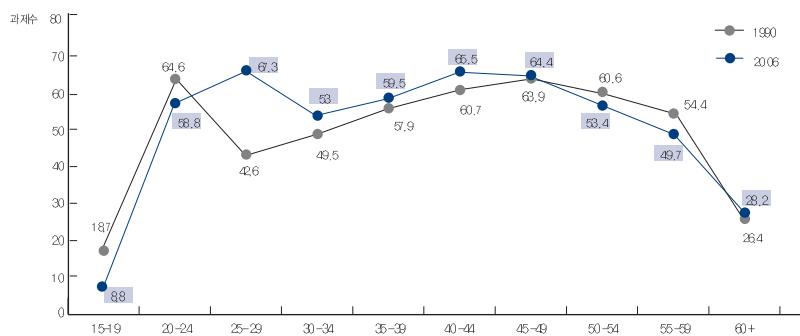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통계연보,
통계청, 지난 30년 간 고용시장의 변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표 2〉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태도	1988	2006	(단위: %)
가정에만 전념	17.5	6.7	
결혼 전 까지 취업	17.8	4.1	
첫 자녀 출산 전 까지	—	6.0	
자녀 성장 후 취업	23.9	11.9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	24.6	27.2	
가정과 관계없이	16.7	50.8	
모르겠음	—	4.3	
계	100	10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그림 1]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도표로 보는 여성통계.

〈표 3〉 연령별 여성취업 장애 요인에 관한 견해

(단위: %)

연령	능력 부족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승진 등 근로여건	구인정보 구하기 어렵다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모름
계	1.7	17.4	2.9	12.6	3.2	47.9	7.4	0.0	6.9
15-19	1.8	34.9	3.5	11.9	1.6	28.2	5.6	0.1	12.6
20-29	1.5	24.8	4.6	15.4	2.3	40.7	4.4	0.1	6.2
30-39	1.4	15.5	3.7	10.8	2.1	58.7	4.4	0	3.3
40-49	2.2	17.8	5.1	12.8	3.6	43.8	8.9	0.1	5.9
50-59	2.3	17.3	4.3	11.6	3.5	43.3	9.5	0	8.3
60+	2.4	10.2	2.5	7.0	2.8	47.8	10.3	0.1	16.9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통계연보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 빈곤의 여성화

한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여성빈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차별 현상과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차이, 사회보장체계에서의 불평등한 지위, 가부장적 가족구조 및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 등과 연동된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용어는 1970년대 말 피어스(D. Pearc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빈곤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해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여성이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인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구주의 연령

에 따른 여·남성가구주의 비율과 빈곤율(가구소득이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가구 중위 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에서 보듯이(표4) 여성이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인 경우에 빈곤의 여성화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가치가 확산되어 있고, 이로 인한 성차별적 사회경제 구조가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빈곤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빈곤의 경험은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와 부양 성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빈민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닌

〈표 4〉 연령별, 성별에 따른 빈곤율 현황

(단위: %)

구 분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1996		2006		1996		2006	
	전체비율	빈곤율	전체비율	빈곤율	전체비율	빈곤율	전체비율	빈곤율
30세미만	23.79	10.70	8.38	16.75	12.70	6.22	4.67	11.35
30~39세	15.52	14.18	13.31	21.56	37.76	5.07	27.30	10.06
40~49세	19.11	16.57	24.96	21.94	26.24	5.08	32.76	9.85
50~59세	18.99	19.15	21.49	20.74	15.22	5.50	19.25	11.60
60세이상	22.59	59.54	31.87	45.40	8.08	25.27	16.02	32.41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김안나(2007). 한국 여성 빈곤 실태와 대책방안

건강상태의 부실,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낙인, 무기력을 동시에 경험함을 의미한다.

3) 임시고용의 여성화

임시고용의 여성화란 여성의 고용이 저임금·비숙련의 시간제 영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임시고용에서 여성의 증가하는 현상은 여성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쉽게 해고당할 수 있어 여성은 쉽게 실직상황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 2005년 여성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67.1%이며, 이중 상용직은 25.6%, 임시직은 30.2%, 일용직은 11.3%이다. 남성취업자와 비교할 때 임시직과 일용직은 13.8%, 2.8% 높았으나 상용직은 15.5%가 낮았다(표5).

여성의 시간제 노동은 정규직 노동자에 적용되는 각종 급부(퇴직금, 월차 및 연차 등의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만 정규직 임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조건을 감수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2.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우리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사회로 접어들었다. 1960년대에 계출산율 6.0명에서 2002년에 1.1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지고 2005년에는 1.08까지 충격적으로 떨어지다가

〈표 5〉 연령별, 성별에 따른 빈곤율 현황

(단위: %)							
여 성				남 성			
취업자	100.0			취업자	100.0		
비임금근로자	32.9	자영업주	19.0	비임금근로자	34.0	자영업주	32.8
		무급가족총사자	14.0			무급가족총사자	1.3
		상용	25.6			상용	41.1
임금근로자	67.1	임시	30.2	임금근로자	66.0	임시	16.4
		일용	11.3			일용	8.5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기획특집

〈표 6〉 출산율

연도	(단위 명)									
	1960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5	2007
계출산율	6.0	4.53	2.83	1.59	1.47	1.30	1.17	1.19	1.08	1.2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2007년부터는 1.26명으로 다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표6). 저 출산은 우리사회에 보육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보육의 사회화, 남성의 육아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한편 저출산 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와서 평균수명이 1960년대 52.4세에서 2005년

77.9세로 연장되었고(표7) 우리사회에 노인돌봄 문제,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일자리 창출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는 개인의 생애주기, 가족구조,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고 있다.

〈표 7〉 연도별 평균수명 추이

연도	평균수명					선진국 평균수명	개발도상국 평균수명
	평균	남	녀	차이			
1905	23.5	22.6	24.4	1.8		—	—
1945	48.2	45.6	50.7	5.1		—	—
1950	51.1	48.3	53.9	5.6		—	—
1960	52.4	51.1	53.7	2.6	69.2	46.1	
1971	62.3	59.0	66.1	7.1	70.9	53.4	
1981	66.2	62.3	70.5	8.2	72.6	57.6	
1991	71.7	67.7	75.9	8.2	—	—	
2000	75.9	72.1	79.5	7.4	75.4	63.9	
2005	77.9	74.8	81.5	6.7	—	—	
2010	78.8	75.5	82.2	6.7	76.9	66.8	
2020	80.7	77.5	84.1	6.6	78.3	69.9	
2030	81.5	78.4	84.8	6.4	79.5	72.5	
2050	83.3	80.7	86.6	5.9	—	—	

자료: 통계청(2005), 정례인구추계
UN,(1998), World Population Prospects

3. 이혼률 증가

우리사회의 이혼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표8에서 보면 결혼대비 이혼율이 1975년에 5.8%, 1985년 10.3%, 1995년 17.1%으로 10년 간격으로 2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2003년에는 54.8%으로 3배로 급상승하였다.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5년에는 40.6%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혼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시 여성의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장기결혼지속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자립과 지위향상, 이혼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및 법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혼 후 생계를 혼자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취업유형을 <표9>에서 보더라도 단순노무종사자 직군이 다른 직군에 비해 2배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표 8> 혼인건수 및 이혼건수의 변화추이

구 분	(단위: 건)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
혼인건수	283,226	403,031	376,847	399,312	398,484	334,030	304,932	316,375
이혼건수	16,453	23,662	38,838	45,694	68,279	119,982	167,095	128,468
조혼인율	8.0	10.6	9.2	9.3	8.7	7.0	6.4	6.5
조이혼율	0.5	0.6	1.0	1.1	1.5	2.5	3.5	2.6
결혼대비 이혼율	5.8	5.8	10.3	10.8	17.1	35.9	54.8	40.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표 9> 시점 별 여성의 직종변화

직업구분/ 시점	(단위: 명, %)		
	이혼전	이혼당시	이혼 후(현재)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의회의원	—	—	—
전문가	32.1	1(0.4)	2(0.9)
기술공 및 준 전문가	32.1	32.0	41.8
사무직 종사자	21(14.6)	20(13.5)	28(12.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94(65.3)	98(66.2)	137(60.1)
기계 및 기능종사자	8(5.6)	9(6.1)	11(4.8)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	—	—
단순노무종사자	15(10.4)	17(11.5)	46(20.2)
계	144(100.0)	148(100.0)	228(100.0)

자료: 변화순 외(2006), 이혼 후 여성의 사회 경제적 조건변화.

4. 다양한 가족형태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

발달된 산업 및 정보화 사회에서 오늘날 전형적 핵가족이 실제로 해체되어가고 있는가? 혹은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가? 가족은 존속 시킬 가치가 없는가? 가족의 미래는 있는가? 정말 미래가 있을 수 있으면 실현가능한가? 그것은 과연 현재의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면서 등장한 가족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 가족의 다양화는 독신자 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한 부모 가족, 이혼·재혼 후 복

합가족, 재구성가족, 공동체가족, 동거가족, 동성애·트랜스젠더 가족, 미혼모가족(미스 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의 노인 가구를 예로 볼 때(표 10) 전형적인 3세대 가족은 약화되고, 노부부가족, 노인독신가족, 조손가족 등 구조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노인독신가족은 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손가족의 경우도 할머니와 손 자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많아 가족형태의 다양화 과정에서 일차적 초점은 여성의 될 수 밖에 없다.

〈표 10〉 한국노인가구의 유형별 분포

	1981	1985	1990	1994	1998	2004	(단위 %)
3세대 동거	69.1	54.8	44.0	39.1	52.6	31.8	
미혼자녀와 동거	11.3	23.5	29.4	14.7	14.9	11.7	
노부부끼리			13.2	29.1		26.6	
노인 혼자	19.8	20.5	10.6	11.9	27.1	24.6	
손자녀동거가구	-	1.8	2.8	5.2	5.2	5.4	
기 타					0.2		

자료: 김태 현(1981), 한국에 있어 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임종권 외(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통계청(1993), 1990년의 인구주택센서스 보고, 통계청.
 정경희 외(1998),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2005),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가 깨어지고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사람과 한국인 가족이 일상적 생활의 장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들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가족, 국제결혼가족이라 칭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은 언어와 일상생활을 물론 가족관계와 젠더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본인의 출신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전제와 질서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11〉에서 국제결혼추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증가를 보면 1990년에 1.2%, 1995년

3.4%, 2000년 3.7%에서 2005년에는 13.6%로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6)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여성들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남편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급속한 결혼진행으로 인한 불안, 가족폭력과 감시, 국적의 불안정,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제와 편견,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난,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최연실 외(2007)의 사례연구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① 자원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망의 접촉 한계
- ② 성역할 측면: 명절·제사에서의 가부장 문화에 대한 거부감, 여성 가사노동 전담에 대한 회의, 남성우월의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시댁식구와의 갈등

〈표 11〉 국제결혼추이

(단위 건, %)

연도	전체결혼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한국인남성		외국인남성+ 한국인여성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5	316,375	43,375	13.6	31,180	9.9	11,941	3.8

자료: 통계청 <http://kosis.sns.go.kr>

- ③ 관계성 측면 : 의사소통의 제약, 배우자지지 부족
- ④ 문화측면: 소통언어의 미숙에서 오는 오해와 한계,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차별의식과 태도에서 오는 불만, 정체성의 문제
-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는 상담,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가족관계증진, 사회적 연망 형성지원, 친정 보내주기, 여성복지증진, 취업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문화교류 등이 있다.

5.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동안 우리사회의 여성·가족정책은 UN 여성 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가족법의 개정, 남녀고용 평등법의 제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가정 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특별법 등 법률상의 차별철폐나 법적평등을 구현하면서 양성 평등 의식이 많이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유아 성폭력과 유아살해로 이어지는 충격적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어 우리사회 가 성폭력사회로 더욱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성

년자 피해 방지 처벌법' (가칭: '혜진·예슬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생활 곳곳에 안개처럼 스며있는 가부장성을 모두 걷어내지는 못하여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30년 동안 여성의 지위가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 진 반면 급속한 문화산업이 팽창하면서 오히려 성차별 현상과 여성의 인권문제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도 사실이다. 이제 여성의 섬세한 특성이 강점으로 작동하여 문화 창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욕구증기가 크게 증대되어 이를 합법적·효율적으로 해소 시킬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6. 세계화 진전

세계화시대는 양성평등문제에 있어서도 국가 간에 상호영향과 파급효과가 지대한 만큼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여성평등지수나 여성권한지

수와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별 남녀평등지수(GDI)는 157개국 중 26위이며, 국가별 남녀권한척도(GEM)는 93개국 중 64위(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07 여성통계연보)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제교류도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보다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을 위시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권과 체제로 확대하는 다변화 시대로 들어서고 있어 이에 걸맞는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정책 내용

여성가족정책은 현대사회와 미래사회 여성과 가족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의 선거과정에서의 여성가족정책공약과 한국여성정책연구소가 제시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여성가족정책을 살펴보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가 제시한 여성정책을 기술하고자 한다.

1.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여성가족 정책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각 당에서 여성가족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한나라당을 보고자 한다.

여성가족정책 5대 기본 방향을 ‘다수 여성을 위한 공약’, ‘체감할 수 있는 공약’, ‘확고한 여성적 관점의 공약’, ‘메니페스토에 입각한 공약’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공약’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방향을 기본으로 <그림2>과 같이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 시켰다.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차기정부의 여성가족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은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으로 출발하여 2006년 11월 3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선진화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명실상부하게 거듭나고 있는 데, 17대 대통령 정부의 여성가족정책 10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 여성정책 공약의 비전과 목표



자료: 제17대 대통령선 거 한나라당 공약.

-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일자리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확대
- 여성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여성 지원강화
- 여성과 남성이 모두 건강한 사회
-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정책 집행력 강화
-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의 조성
- 생활환경에서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사회
-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조성
- 한반도 평화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 한국을 움직일 여성의 힘 키우기(공공부문)

3. 여성부의 여성정책

여성가족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출발하면서 2008년 2월부터 여성부와 보건복지기획부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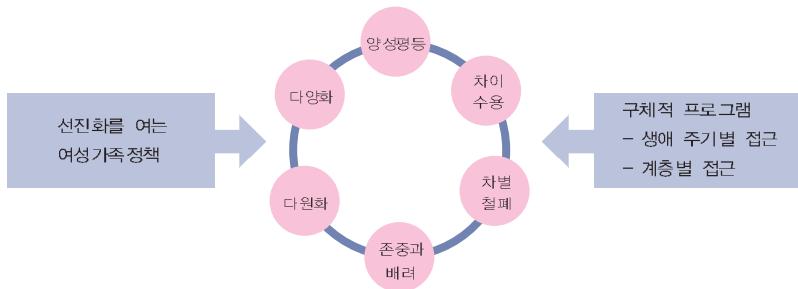
2008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정책을 크게 3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서비스 강화
-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

맺음말

선진화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는 ‘들어가는 밀’에서 제기되었던 내용, 여성·가족정책의 어려운 정책 내용을 고려하여 만든 <그림3>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즉 다양화, 다원화, 존중과 배려, 양성평등, 차이수용 및 차별철폐의 틀을 전체적으로 깔고 구체적 정책은 생애주기별, 계층별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그림 3).

[그림 3] 선진화를 여는 여성가족정책



하나의 예를 들면,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사회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다양화, 다원화, 존중과 배려, 양성평등, 차이수용 및 차별철폐라는 맥을 관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 즉, 태아기에는 임신·출산의 사회적 책임확대, 영아기는 유아용품 등 안전문제, 유아기는 보육문제, 아동기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어린이집 사교육비, 청소년기는 학교폭력 및 가출, 청년기는 직장 진입 문제 및 자녀양육부담, 장년기는 직장 다시 진입하기, 가사 노동 가치의 인정 및 노부모 돌봄 문제, 노년기에 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치매 등 장기보호 등에 집중하여야 한다. 계층별로는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빈곤의 여성화를 막고, 노동시장에서 낮은 소득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2007년 12월 정부출연(연) 정책연구 우수 사례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책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정책' 양성평등 법령 정비' '특별지원청소년 정책'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등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선진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양성평등 관점 을 확산시키려는 노력과 생애주기별로 중요한 정책 이슈를 연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here and now'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 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부가 영어로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성부가 명실상 부한 양성평등부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995년 제정된 '여

‘성별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 진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충분히 고민하여 입장을 분명히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남성 교사 할당제에 대해 양성평등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합리적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화 정책을 선진화 정책으로 만들 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사회에 걸 맞는 여성들의 임타워먼트와 의식향상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영국 도리스 레싱은 “작가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글을 쓴다.”라고 말했듯이 남성, 여성 을 가르지 말고 남성여성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삶 을 구현하는 명실상부하게 양성평등 방향으로 나 가야 한다.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7). 정부출연(연) 정책 연구 우수시례집
- 김경애 외(2007). 차기정부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만내(2007). 한국여성인권실태와 대책방안.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주계학술대회 자료,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이문숙(2007).『여성복지론』. 교문사
- 박선영·윤덕경·박복순·이성은·한지영(2007).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관련 법 제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변화순·김혜영·윤홍식·한지숙(2006).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 사몬느 드 보바르조총식 역, 1993).『제2의 성』. 을유문화사.
- 엥겔스 F. (김대중 역, 1991).『가족, 서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 여성부(2008. 3.22). 여성부 업무보고 자료.
- 일중권 외(196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84.
- 정경희 외(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연실·권웅혁·김태성·우설희(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회합’의 모색으로. 한국기족관계학회지 12-2
- 통계청(1993). 199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보고. 통계청.
- 통계청, 지난30년 간 고용사정의 변화.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 <http://kosis.nso.go.kr>
- 한국여성개발원(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고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2007 여성통계연보
- 한나리당 여성공약 (2007. 12. 05).
- Cixous, H.(1992). *Du Feminin*.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 Firestone, S. (1970). *The Dialectic of Sex :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 N. Y. : William Morrow.

기획특집

- Gisela Bock and Susan James (1992), Beyond Equality and Differen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Mill, J-S. The Subjection of Women, in J-S Mill and Harriet Taylor Mill, Essays on Sex Equality(ed.), Alice S. Rossi (1972), Univ. of Chicago Press,
- Mitchell, J.(1971), Woman's Estate, N. Y. : Pantheon Books.